

○○본부

#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3. 9. 26. ~ 9. 27. (2일간)
- 감사인원 : 3명
- 지적사항 : 5건 (통보 1, 회수 1, 지급 1, 현지처분 2)



## I. 감사개요

### 1. 감사목적

- 업무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

###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본 감사 : 2013. 9. 26. ~ 9. 27. (2일간)
- 대상기관 : ○○○○본부 1개지사
- 감사자 : 감사반장 외 2인
- 감사범위 : 2012년 종합감사 실시 이후부터 감사 실시일 전월 말일 까지 업무전반

### 3. 중점점검사항

- 지적측량 기술감사 분야인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및 지적측량 접수업무 처리실태와 측량성과도 교부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점검
-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의 적정성 점검
- 민원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측량(전산) 장비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수입인지 첨부 현황,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 제세공과금 납부,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의 적정성 점검
- 일선의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사례 공유 및 확산

## II. 감사처분현황

#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성과 협의회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지적측량성과협의회개최)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처리 결과 성과차이에 대한 걱정여부 검토 및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측량자는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해결방안 및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신뢰도 제고 및 지적측량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5조(지적측량 성과협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하여 확인측량 실시 직원과 성과정정 민원발생 직원에 대하여 연도말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시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CRM에 민원업무처리 내역 등록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민원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내 민원처리(상담)부 및 민원사무처리부에 민원업무처리 내역을 등재하지 않았으며, 민원해결방안 및 성과결정을 위한 측량성과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조치할 사항

○○○○○○장은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현황]

완료일자	소재지	민원발생 사유	측량자	성과정정 (○, ×)	측량성과 협의회(○,×)	CRM등록 (○, ×)
'12.12.12.	○○읍 ○○리 ##	경계성과 차이	○○○	○	×	×
'12.12.12.	○○읍 ○○리 ##	"	○○○	○	×	×

# 감 사 실 회 수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현황측량)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2.12.27 국토해양부예규 제263호)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2항 제6호(지적현황측량)에 따라 “인·허가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에 4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 산###번지는 매매에 의한 면적(13,637㎡)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였으므로 지정(140%) 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100%) 적용하여 지적측량수수료 183,700원(부가세 포함)을 착오(과소) 수입 하였습니다.

## 조치할 사항

○○○○○○장은 과소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 445,500원(부가세 포함)을 수입 조치하시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내역]

(금액단위: 원)

점 수		토지소재지	수수료적용(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종목	일 자		정(A) (140%)	오(B) (100%)	차액 (B-A)	
현황 제89호	2013.04.15	○○면 ○○리 ###-25	1,446,500	1,184,700	261,800	추가납부
현황 제111호	2013.04.26	○○면 ○○리 산###	643,500	459,800	183,700	추가납부
계			2,090,000	1,446,500	445,500	

그런데도 “현지(현장) 품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리 ###-25번지 현황도로면적(108㎡)을 측정하고, 연접된 필지인 ###-27번지 대하여 동일한 면적(108㎡)으로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였으므로 지정(140%)현황측량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나, 붙임 현황과 같이 일반(100%) 적용하여 지적측량수수료 261,800원(부가세 포함)을 착오(과소) 수입 하였으며

# 감 사 실 지 급

제 목 인지세 관련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의뢰(계약) 수입인지 미 첨부현황]

계약 (접수일)	계약건명	계약자	계약(완료) 금액	수입인지 미 첨부금액	비고
2013. 1.16	○○, ○○1지구 구획경지정리사업	○○○○	18,067,500	20,000	총15
2013. 4. 1	○○-○○ 도로공사건설	○○○○○○○○○○	34,236,400	20,000 (20,000)	총68
계				40,000	

또한 「지적측량의뢰서 등 인지세 납부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사업지원실-4490, 2011.10.6)」 문서를 시행하여 지적측량 의뢰자가 사기업(또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제4호의 규정된 단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공사이므로 기재금액(부가세 포함)이 1천만원초과~3,000만원이하 2만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는 4만원을 받드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위 현황과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 조치할 사항

○○○○○○○○장은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세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지 조 치 ( 처 분 ) 서

### □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 □ 내 용

-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 지적측량자료부 작성 소홀
  - 현황측량성과도(의뢰인 지정선) 작성 소홀
  -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소홀
  
- 「업무규정」 제19조(지적측량결과도) 및 제19조2(지적측량결과도 검사)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는 당해 지사장이 주요점검(13개 항목) 사항에 대하여 성과 검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측량팀원 및 팀장은 항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사장에게 결재를 요청하여야 하고, 지사장은 현장지원시스템(MOS)에 나타나는 주요점검 사항에 대하여 적정 및 보완여부를 판단하는 등 시스템 상에서 관련규정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작성 유의사항 통지」(사업지원실-2300, 2012. 5. 31.)에 따라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현장 점유현황선”으로 발급하여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의뢰인 지정선**”이라고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실시”(고객지원팀-1011: 2009. 4. 22.) 및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요령 개선 알림”(고객지원부-3481 : 2012.09. 27.)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 출장 전 측량준비도를 현장지원시스템상에서 선결재 성과 검사를 받아 현장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교부하고, 측량결과도 상단에 “**성과도 현장교부**”라고 날인하고 성과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도 현장지원시스템 지적측량결과도 성과검사 점검 소홀로 면적 측정부 검사자 확인 누락, 지적측량자료부 작성누락(기준점 내역), 지적측량결과부 작성(의뢰인 지정선) 소홀,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소홀 등 지적측량결과도 검사 시 소홀한 부분이 발견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결과도 검사가 미흡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13. 9. 27.

2013. 09. 26.부터 2013. 09. 27.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 ○ (인)

## 현 지 조 치 ( 처 분 ) 서

□ 제 목: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자 미지정

□ 내 용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3조(차량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차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차량 유지상태 및 운행현황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차량관리책임자인 지사장은 업무용 임차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직원 중에서 차량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9팀, 2013년 8팀을 관리하면서 차량관리자 지정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2013. 9. 27.

2013. 09. 26.부터 2013. 09. 27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처분)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 ○ (인)